



화협상담실은
보험과 안전점검, 방재기술지도 등
특수건물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
대한 궁금증과 알고 싶은 사항을
풀어드립니다

방재상담

☎ : 특별피난계단에 설치하는 배연설비의 풍량, 풍압과 배연구 및 급기구의 용량에 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.

☎ : 우리 나라 건축법(시행규칙 제 20조)에는 수치에 대한 세부 규정이 없으므로 한국공업규격(KSF 2815) 및 일본 건설성고시에 규정된 내용을 알려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.

1. 배연기 풍량은 최소 240m³/min(특별피난계단 전실과 비상용승강기 승강로비를 겸용하는 경우는 360m³/min), 풍압은 20mmAq 이상으로 할 것.

2. 모터 내장형의 배연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385℃에 전지는 내열장치를 할 것.

3. 송풍기의 풍량은 최소 480m³/min, 풍압은 50mmAq 이상으로 할 것.

4. 배연구에 있어서 자연환기에 의한 경우에는 배연구의 개구면적을 4m² 이상(단, 특별피난계단 전실과 비상용승강기의 승강로비를 겸용할 경우에는 6m² 이상)으로 하고, 기계배연에 의한 경우에는 서두의 각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는 계산방식에 의하되 최소 개구면적은 1,800cm² 이상으로 할 것.

5. 급기구의 개구면적은 최소 1m² 이상으로 할 것.(단, 특별피난계단 전실과 비상용승강기 승강로비를 겸용할 경우에는 1.5m² 이상)

☎ : 소화설비규정 중 자동화재경보설비와 수동화재경보설비 활인율의 차이점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.

☎ : 자동화재경보설비(수신기, 발신기, 음향장치, 전원 등)가 소화설비활인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경우에는 8%의 활인이 적용되지만 이중 자동설비로서의 기능을 담당하는 감지가 동기준에 미달됨으로써 수동화재경보설비로서의 기능

만을 인정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기본요율의 5%를 할인할 수 있습니다.

☎ : 락크식 창고건물(높이 25m, 바닥면적 1,400m²)의 적용 소방시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.

☎ : 1. 바닥면적으로 보면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설치대상이 됩니다. 그러나 높이가 20m를 초과하는 장소는 유효하게 화재감지를 할 수 없으므로 동설비의 효용성이 없습니다. 그리고 창고에 있어서 섬유류 등 특수가연물을 지정수량의 1,000배 이상 저장 취급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 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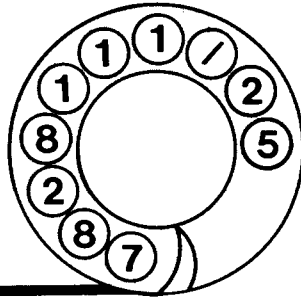
2. 귀 창고의 경우는 면화류 등 특수가연물을 선반에 저장하므로 별도로 자동화재 탐지설비를 설치할 필요없이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소화설비(연기감지에 의한 감지방식 부설)를 설치하되 각 선반 하단마다 감지기 및 스프링클러 헤드를 효과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.

3. 창고내 천정, 반자, 선반 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2.5m 이내, 바닥으로부터 높이 4m 이하마다 헤드를 설치하여야 하므로 귀 창고의 경우 각 선반의 하단에 헤드를 부착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.

☎ : 보일러실, 건조실, 세탁소, 주방, 대량 화기 취급소 등의 자동화산 소화용구 설치 기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.

☎ : 1. 자동화산 소화용구의 설치는 소방법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바닥면적 20m² 이하의 대상물에 한하여 바닥면적 10m²당 1개 이상을 설치토록 해야 합니다.

2. 주방에 있어서는 가정용 주방을 제외한 영업용 등의 주방을 대상으로 합니다.



보험상담

문 당사는 전용공업 지역에 15만톤 도크를 건설, 선박수리를 전문으로 하는 조선업체로서 일반 요식업 및 제조업, 서어비스업체와는 달리 전문 경비용역업체가 당사 전 외곽을 24시간 경비하여 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제한구역 설치로 외부인의 출입 및 접근이 금지되고 있는 바 제 3자인 타인에 대한 보상만을 규정한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로서 보상범위 및 약관내용에 대해 의문점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 질의합니다.

답 1.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은 가스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제 3자(타인)에게 신체 및 재물손해를 입혔을 경우 손해배상을 하여야 할 때 그 손해배상 책임을 보험자가 부담하는 보험입니다.

그러므로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피보험자 자신의 재물손해와 동거하는 친족 등 특수관계인,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보상되는 종업원의 인명피해는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.

2. 귀사에서 가스사고가 발생하면 구내에 있는 용역 및 협력업체, 수리중인 선박 등 타인소유의 재물과 관련업체 종업원 등의 인명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는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의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됩니다.

3.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은 취급하는 가스의 종류별·업종별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가능성·사고의 크기 등이 고려되어 보험약관 및 요율이 제정되었

으며 3년간 평균 손해율이 40% 미만이면 다음 계약 시 보험료의 30%를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.

〈질의자 : (주)부산수리조선소·응답자 : 기획조정실〉

문 당행에서 점포를 임차하여 사용할 경우 임차건물에 대한 내부공사를 임차인인 당행이 예산을 들여 시공하여 업무용건물 계정에 계상한 경우에, 임대인의 건물화재보험가입과는 별도로 내부공사 부분에 대하여 임차인을 피보험자로 하고 동 공사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여 화재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여부와 그 구체적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
답 1. 화재보험 계약에 있어 하나의 건물이 관련 법규에 의하여 둘 이상으로 완전 방화구획이 되었거나 또는 소유권을 달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건물 중 일부분만 별도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.

2. 귀행의 경우 임차인으로서 내부공사 부분을 자기계정으로 하여 화재보험에 가입하시려면 공사내역별로 가액을 평가하여 그 명세서를 임대인의 건물화재보험 계약에 명기, 증액조치하고 화재시 그 부분의 손해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그 소유지분을 보험증권상에 확실하게 기재하여 계약체결하시면 됩니다.

〈질의자 : 한국주택은행 관재부·응답자 : 기획조정실〉

설마설마 방심말고
조심조심 불조심